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 교직원에 적용한다.

제 3 조 (평균임금의 정의) 평균임금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연봉 및 제수당 또는 본봉, 상여금 및 제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말한다.

제 4 조 (지급기준) 퇴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
1. 교원

- 가.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후('75. 1. 1 이후) 채용 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서만 지급
- 나.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이전('75. 1.1 이전) 채용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당시 지급 평균임 금×('75. 1.1 이전)재직근무 년월수로 지급하고 '75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에 의해서만 지급

2. 행정직원

- 가.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후(1978. 1. 1 이후)채용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서만 지급
- 나.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 이전('78.1. 1이전)채용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당시 평균임금 ב78년 1월 1일 이전 재직근무 년월수로 지급하고 78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은 사립학교 교 원연금법에 의해서만 지급

부 칙

본 규정은 1973년 2월 25일부터 개정 · 실시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76년 1월 1일부터 개정 , 실시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80년 2월 29일부터 개정 · 실시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개정 · 실시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